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8가합113414 판결 [공사대금의 청구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심진섭, 전태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62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는 D로부터 충남 서산시 E공장 개선공사를 발주 받은 원사업자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를 합병한 회사이다(이하 C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는 위 개선공사 중 전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수급 받아 시행한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5.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 8억 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4.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8. 19.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8억 80만 원에서 1억 9,635만 원 증액된 9억 9,71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가 C 주식회사를 합병한 이후, 공사기간을 2015. 5. 4.부터 2015. 11.까지, 계약금액을 이 사건 1차 변경계약보다 5,500만 원 증액한 10억 5,215만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 이 사건 1차 변경계약,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다. 정산 합의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후, 같은 날 9억 5,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정산금액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정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2015. 4. 27.에,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은 2015. 4. 29.에 각 이루어졌는데, 입찰 견적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일 뿐이어서 입찰 당시에 추가인력투입을 예상할 수 없었고, 선행공정이 완료되지 않아 원고의 착공이 늦어졌다.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야간과 주말에 추가 인력투입이 불가피하였는데, 절대적으로 공기를 준수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공사량 증가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추후 원고가 추가로 투입한 인건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투입한 추가공사대금 487,622,565원(= 원고의 총 투입비 1,444,122,565원 - 수령금액 9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성립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계약 내용에 없었던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

2) 원고의 추가인력투입이 추가 공사에 해당하는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기 내에 완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3, 15,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입찰 참가 업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이전에 자료설계 도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았고, 현장설명을 통하여 공사범위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 현장설명 당시 입찰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업체로 선정한 것은 원고가 입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시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인 점, ③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수급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현장설명서 별첨1 현장별 특기사항서는 작업일정과 관련하여 ‘상기 일정은 무조건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 공사일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공기 지연 발생 시 야간/휴일 작업을 병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로서는 공사일정 준수를 위해서 야간, 휴일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출력일보(갑 제20호증)에는 2015. 5. 2.부터 작업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착공일인 같은 달 4일부터는 33명의 인력이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착공일에 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서 물량증가에 따라 공급가액을 1억 7,850만 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 공급가액 9억 650만 원 - 이 사건 최초계약 공급가액 7억 2,800만 원), 노무비를 79,039,599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 노무비 2억 80,026,027원 - 이 사건 최초계약 노무비 2억 986,428원)을 각 증액하였고,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에서는 공정추가에 따라 공급가액을 5,000만 원(= 이 사건 2차 변경계약 공급가액 9억 5,650만 원 - 이 사건 1차 변경계약 공급가액 9억 650만 원), 노무비를 21,642,838원(= 이 사건 2차 변경계약 노무비 3억 1,668,865원 - 이 사건 1차 변경계약 노무비 2억 80,026,027원)을 각 증액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에 객관적인 물량증가나 공정추가가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노무비도 함께 증액이 이루어진 점, ⑦ 이 사건 현장설명서 별첨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14조의 ② 제5항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와 수급사업자는 공사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이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동일한 9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인정하였을 뿐,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인력투입을 사유로 하는 추가 공사대금 확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15. 11. 30.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8. 11.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었거나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인력투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11호증, 제28호증의 ① 각 기재나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1호증의 음성,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며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그 차액인 약 4~5억 원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은 원고 대표이사 I에게 ‘제가 사장님이랑 약속한 부분에 관하여는 해드리고 갈게요. 풀어드리는 거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갈게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의 공사 관리 그룹장인 H가 원고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공사수행 시 추가역무가 과도하게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적법하게 증액하여 줄 것을 F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현장소장인 F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더욱이 F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때는 F이 피고에서 퇴직을 일주일도 안 남긴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F이 I과

‘약속한 부분’을 추가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H의 위 지시사항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적법한 방법으로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H는 이 법정에서 2018. 10. 2.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손해를 많이 입었다는 I에게 ‘이미 그 공사는 현장소장을 통해서 충분히 회사의 룰에 따라서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 대표이사 I은 피고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 소속 직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I은 그러한 친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한 보상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상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곧바로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천지성, 판사 이영곤